

輸出自律規制와 쿼타配分制度 改善方案

李 性 燮

▷ 目 次 ◁

- I. 序 言
- II. 輸出自律規制의 特徵
- III. 現行 쿼타配分制度의 概要
- IV. 現行 쿼타配分制度의 問題點
- V. 輸出自律規制의 模型
- VI. 輸出쿼타配分制度의 改善方案
- VII. 要約 및 結論

I. 序 言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시작되고, 최근에 이르러 절정에 이른 느낌을 주는 先進國들의 新保護貿易主義는 關稅 이외의 規制手段을 사용하여 수입을 규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新保護貿易主義라고 지칭되는 輸入規制의 형태는 다양하나 그 중에서도 輸出自律規制

(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가 가장 선호되는 規制型態로 등장하고 있으며 선진국 특히 美國으로 수출되는 많은 품목에 輸出自律規制가 이미 이루어져 있거나 논의되고 있다.

증전에는 輸出自律規制의 定義가 輸入國이 강압에 의하여 輸出業者들로 하여금 關稅나 輸入制限(import quota)에 代置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태의 輸出物量規制를 취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만 定義되었으며 이 정책에 관한 輸出業者들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별반 없었다. 다만 몇몇 經濟學者들에 의하여서 關稅나 輸入制限보다는 輸出自律規制가 輸出業者에게 더 선호되는 輸入規制類型이라는 사실이 언급되었다. 本稿의 부차적인 목적은 輸出自律規制가 발효될 때에 이 조치를 갈망하는 輸入國의 生産業者들뿐만 아니라 輸出業體도 이 조치가 발효되기 이전보다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최근의 學界의 研究結果를 소개함으로써 輸出自律規制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데에 있다.

筆者: 韓國開發研究院 副研究委員

* 院內 研究委員들과 輸出組任員 여러분들의 批評에 감사할 표하며 또한 本研究를 수행함에 있어서 姜聲潤 主任研究員에게 크게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그러나 國內輸出業體들이 海外市場에서 國內業體間의 過當競爭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드는 自發的 自律規制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輸出自律規制는 다른 유형의 輸入規制에 대한 代案(alternative)으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輸出業者에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즉 輸出業者의 選好如否에 상관없이 輸出自律規制는 현실적인 제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모든 형태의 輸出物量規制가 그것이 自發的 自律規制이든지 혹은 輸入規制의 변형으로 등장한 輸出自律規制이든지 간에 반드시 한정된 輸出쿼타物量을 輸出業體間에 배부하는 문제를 수반한다는 사실에 있다¹⁾.

輸出自律規制는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업체들이 輸出物量의 공급을 自制함으로써 성립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輸出自律規制는 본문에서 상론하는 바와 같이 당해 製品의 價格上昇을 유발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미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輸出自律規制 이후에 供給物量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더욱 더 받게 마련이다. 따라서 輸出쿼타 配分過程에서 흔히 新規參與者의 개입이 배제되기 마련이며 한정된 輸出쿼타는 이미 수출에 참여하고 있던 輸出業體들의 既得權을 존중하는 형식으로 배분된다.

1) 本稿에서 輸出自律規制(VER)는 輸入國이 關稅내지 輸入制限에 대신하여 輸出業者에게 輸出物量을 規制하게 하는 유형의 輸入規制政策을 지칭하고 있으며 自發的 自律規制는 輸出業者들이 輸出市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輸出業者 談合의 성격을 띠는 輸出物量規制를 지칭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輸出物量規制라고 할 때에는 輸出自律規制와 自發的 自律規制를 통틀어 輸出物量이 輸出業者에 의하여서 규제되는 모든 유형의 정책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본문중에는 때때로 輸出自律規制와 輸出物量規制가 혼용되어 서로 같은 의미를 지니는 用語로 사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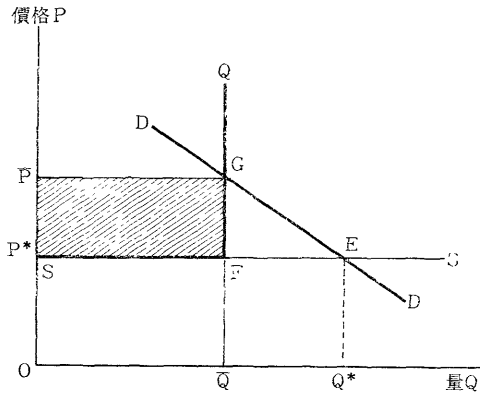
장기적으로 이런 형태의 輸出쿼타配分方式은 주어진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점에 있어서나 또는 바람직한 輸出商品構造를 확립한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本稿의 가장 큰 목적은 輸出物量規制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제약으로 주어졌을 때에 여하한 형태의 輸出쿼타配分方式을 취하는 것이 가장 國民福祉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다.

第Ⅱ節에서는 輸出自律規制의 특징 특히 輸出物量規制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와 여하히 輸入國의 生産業者와 輸出業者가 동시에 輸出自律規制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微視經濟的 接近方法을 사용하여 묘사되었다. 第Ⅲ節에서는 현행 輸出쿼타配分制度의 골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第Ⅳ節에서는 현행 쿼타配分制度의 문제점이 열거되고 있다. 第Ⅴ節에서는 현행 쿼타配分制度의 改善方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간단한 一般均衡分析模型이 소개되고 이 모형을 통하여 輸出物量規制가 制約條件으로 주어졌을 때에 最適의 解決方案은 무엇인가하는 문제가 분석된다. 第Ⅵ節에서는 第Ⅳ節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분석과 第Ⅴ節에서 모색된 해결 방안을 결합하여 현행 쿼타配分制度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第Ⅶ節에서는 요약과 결론이 취급된다.

Ⅱ. 輸出自律規制의 特徵

輸出自律規制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여타의 輸入規制措置와

[圖 1] 輸出物量規制



輸出自律規制를 구분하는 輸出自律規制의 특이한 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의 활발한 연구를 통하여 이 분야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1. 輸出物量規制의 効果

輸出自律規制의 특징들은 輸出物量規制가 주는 효과에 의하여서 잘 나타난다. [圖 1]은 輸出物量規制가 이루어진 市場의 輸入需要曲線과 輸出供給曲線이 단순화된 형태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단순화된 그림을 통하여 輸出物量規制가 주는 효과를 명료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圖 1]에서 직선 DD는 輸入需要曲線을, 직선 SS는 輸出供給曲線을 각각 표시하고 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두 곡선을 모두 線型으로 가정하였으며 輸出供給曲線은 輸出供給彈力性이 매우 크다고 가정하였다. 貿易上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경우 이 財貨市場의 균형은 점 E에서 결정되며 이 財貨의 市場價格은 P^* 수준에서 결정된다.

輸出物量規制는 그것이 유효한 경우에 輸出

物量이 均衡去來量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圖 1]에서는 \bar{Q}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想定하였다. 輸出供給物量이 \bar{Q} 에서 제한되면 輸出供給曲線은 SFQ로 바뀌게 되며 均衡點은 점G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가격은 P^* 에서 \bar{P} 로 상승하게 된다.

輸出物量規制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物量規制를 받은 財貨市場에 있어서의 가격의 상승이다. 이와 같은 價格上昇으로 말미암아 生産業者들은 輸出物量規制를 받기 이전과 동일한 生産單價를 유지하면서도 더욱 많은 販賣收入을 얻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圖 1]에서 斜線 친 부분만큼의 地代를 얻게 된다. 輸出物量規制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消費者들이 같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消費者 剩餘의 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 價格上昇效果

輸入國의 生産業者들에 의하여 輸出自律規制가 갈구되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輸出物量規制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하면 높은 生産單價로 말미암아 市場에서 도태될 상황에 처해 있던 輸入國의 生産業者들이 다시 생산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輸入國의 生産業者들이 輸出業者들에게 輸出自律規制를 하도록 강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 地代の 發生

반면에 輸出業者들은 輸出自律規制로 인해 輸出物量을 規制받는 대신에 地代所得을 얻을 수 있게 된다. 輸出自律規制가 발효되는 전후를 비교할 때에 어느 경우가 輸出業者에게 득

이 더 클가 하는 문제는 市場의 상황과 輸出物量規制의 크기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나 분명한 사실은 輸出業者들에게도 輸出自律規制에 대한 誘因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輸入國의 生産業者들과 輸出業者가 談合하여 輸出物量規制를 도모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는 추후에 상론하기로 한다.

輸出物量規制가 이루어지는 산업에 있어서는 輸出業者가 複數인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輸出物量規制가 이루어지는 경우 輸出쿼타를 여하히 參加企業들에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輸出物量規制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輸出에 참여하고 있던 기업들조차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物量供給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新規企業들의 참여는 그만큼 제한적이다. 輸出쿼타 配分問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輸出物量規制가 이루어진 이후에 형성된 價格 \bar{P} 가 그 이전의 價格 P^* 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同製品에 대한 輸出業者들의 輸出意慾이 輸出自律規制 이후에 더욱 강하여진다는 사실이다. 輸出物量規制가 실시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輸出業者間 輸出쿼타配分問題에 대한 분석은 第Ⅲ~Ⅵ節에서 취급된다.

다. 消費者의 犧牲

輸出自律規制가 실시되는 경우 輸入國의 生産業者들은 인상된 가격에서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輸出業者들은 地代所得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되었다. 그러나 消費者들은 인상된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인상된 價格部分(圖 1에서의 斜線部分) 만큼의 消費

者 剩餘를 生産業者에게 빼앗겨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일부의 消費者 剩餘(ΔGFE 部分)는 사회적 손실(dead-weight loss)로서 증발하게 된다. 즉 輸出自律規制라는 게임에서 消費者만이 유일하게 純損失을 경험하고 있다.

2. 輸出自律規制에의 誘因

최근 「해리스」(R. Harris, 1984) 教授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輸出自律規制가 이루어질 경우 輸入國의 生産業者는 價格先導者(price leader)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는 이 사실은 2人게임模型을 사용하여 증명하였다. 즉 輸出業者의 공급이 물량적인 제약을 받게 될 경우 輸入國의 生産業者는 이와 같은 輸出業者들의 제약을 이용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독점적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된다.

또한 「오노」(Y. Ono, 1984) 教授는 輸出業者가 輸出自律規制 이전에 輸入國市場에서 價格先導者였다고 想定하고 輸出業者가 같은 物量を 輸出하더라도 그 자신이 輸入國市場에서 價格先導者가 되어 輸出하는 것보다 輸出自律規制에 의하여 物量쿼타를 배정받을 수 출하는 것이 언제나 높은 價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²⁾. 이것은 輸出自律規制下에서 합의된 輸出物량이 輸出業者가 輸入國市場에서 價格先導者가 되어 최적으로 결정하였던 輸出物量에서부터 별반 크게 감소하지 않는 한 輸出業者가 輸出自律規制로 말미암아 더 큰 이익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輸出自律規制는 輸出自律規制가 설정되는 시점에 있어서의 輸出物量으로부터 더 이상 輸出物량을 월등히 증가시키지 않겠다는 輸出業者들의 선언이라는

2) 필자는 이 부분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노」 教授가 보내준 그의 분석에 대한 數式證明에 힘입었다.

점을 감안한다면 輸出自律規制時에 합의되는 輸出物량이 輸出業者가 輸入國市場에서 價格先導者가 되어 最適으로 결정하였던 물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輸出自律規制가 이루어지는 경우 輸入國의 生産業者뿐만 아니라 輸出業者도 더 큰 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³⁾.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輸出自律規制下에서 수출하는 것이 그 자신이 輸入國市場에서 價格先導者가 되어 輸出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輸出自律規制가 이루어지는 경우 輸入國市場에서는 輸入國의 生産業者가 價格先導者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름만 價格先導者이지 輸入國의 生産業者는 사실상 獨占供給者와 같은 행세를 하게 된다. 즉 輸入國의 生産業者는 輸出自律規制에 의하여 합의된 쿼타량을 국내의 需要曲線에서 제외한 연후에 獨占供給者로서 獨占價格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에 輸入國의 生産業者가 명실상부한 獨占供給者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은 [圖 1]의 供給曲線 SFQ 와 같이 輸出業者의 供給曲線이 輸出쿼타物量에서 수직으로 上向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輸出쿼타物量을 초과하면 輸出業者의 限界費用曲線(供給曲線)은 무한대의 비용을 표시하는 듯한 모습을 하게 된다. 따라서 輸入國生産業者는 輸出쿼타物量을 제외한 여타

의 需要曲線을 이용하여 輸出業者를 의식할 필요없이 獨占價格을 결정할 수 있다.

반면에 輸出自律規制가 이루어지지 않고 輸出業者가 價格先導者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輸出業者는 輸入國의 生産業者의 右上向供給曲線을 의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獨占者로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輸入國의 生産業者의 供給物量을 차감한 연후에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결국 같은 輸出物量이라 하더라도 輸出自律規制가 이루어져서 輸入國의 生産業者들이 獨占供給者 행세를 하며 결정한 가격이 輸出自律規制 없이 輸出業者가 價格先導者가 되어 결정한 가격보다 언제나 높다.

이상의 사실은 輸出自律規制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은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市場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한 輸入國의 生産業者들뿐만 아니라 輸出業者에게도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이와 같이 양국의 生産業者들이 輸出自律規制에 의하여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이 모든 혜택은 輸入國의 消費者들에게 높은 가격과 일부 消費者剩餘의 滅失(dead-weight loss)이라는 형태의 희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I. 現行 쿼타配分制度의 概要

현행 輸出쿼타配分制度에서는 輸出物量規制가 이루어지는 각 組合別로 輸出業體間에 輸出쿼타가 배분되고 있다. 각 輸出組合이 채택하고 있는 輸出쿼타의 配分基準은 대체로 전체적인 윤탁이 유사하나 다만 적용되는 細部

3) 輸出業者가 輸出自律規制以前에 輸入國市場에서 價格先導者였다고 想定한 것은 輸出自律規制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輸出業者의 費用曲線이 輸入國의 生産業者의 그것보다 월등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輸出業者가 쉽게 價格先導者의 위치를 점유할 수 있어서 그렇게 想定한 것이다. 「오노」教授는 輸出業者가 輸出自律規制以前에 價格追從者였다고 하더라도 輸出自律規制는 輸入國의 生産業者뿐만 아니라 輸出業者에게 더 큰 이익을 준다는 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증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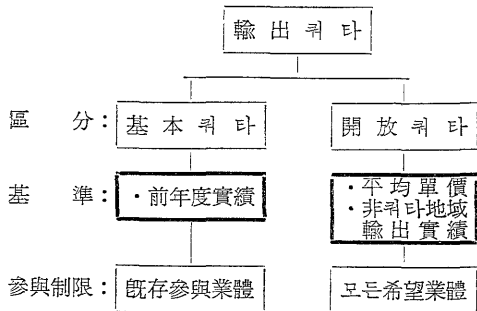
指針에 있어서만 각 組合의 특수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현행 配分制度의 概要

細部指針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輸出組合이 채택하고 있는 輸出配分制度는 [圖 2]에 의하여 요약될 수 있다. 즉 모든 輸出配分은 基本配分과 開放配分으로 양분된다.

가. 基本配分과 開放配分

[圖 2] 基本 및 開放配分の 配分



양국 업체간 또는 정부간 또는 수출업체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特定品目の 輸出配分은 우선 이 품목의 해당국 수출에 참여하고 있던 업체들 사이에 전년도 輸出實績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이와 같이 배정되는 配分部分을 基本配分이라고 지칭한다.

예컨대 特定輸出業體가 對英國 신발류의 輸出自律規制가 이루어지던 해에 英國에 대하여

100足 상당의 特定類의 신발을 수출하였다면 그 업체는 다음 해에 100足の 基本配分을 배정받으며 이 업체가 英國에 대하여 계속하여 100足の 輸出實績을 달성하는 한 이 업체에 주어진 신발류에 대한 對英國輸出의 基本配分은 계속하여 100足으로 남아 있게 된다.

基本配分의 特徵은 어느 업체가 해당초부터 基本配分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도 자연히 基本配分配分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즉 基本配分은 輸出自律規制가 이루어지던 시점에서 수출에 참여하던 업체들의 既得權을 보호하여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⁴⁾.

반면에 開放配分은 희망하는 모든 有資格輸出業體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開放配分은 基本配分이 배정된 殘餘部分, 兩國間輸出配分の 增加分, 그리고 基本配分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들로부터의 벌칙으로 인한 配分의 還收分 등으로 구성된다. 開放配分을 이룰 配分을 받기를 희망하는 수출업체들 사이에 배분하는 데에는 대체로 두 개의 기준이 사용된다. 하나는 平均單價에 의한 구분이고 다른 하나는 非配分地域에 행한 輸出實績에 따른 구분이다⁵⁾.

平均單價에 의한 구분이란 개별 수출업체의 輸出配分 申請分을 그들이 첨부한 輸出信用狀(L/C)에서 계산해낸 平均單價를 가지고 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높은 순위에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配分量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平均單價는 輸出信用狀에서 계산해낸 總輸出豫想額을 輸出豫想物量으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또한 平均單價는 配分配分希望業體들의 전년도 輸出實績을 평가하는 데도 사용된다. 즉

4) 예외적으로 開放配分의 일부가 실적으로 인정되어 基本配分 配分에 참고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적이 만들어진 연유에 상관없이 基本配分은 그렇게 만들어진 실적을 차기에 승계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5) 여기에 소개되는 配分配分基準은 주로 纖維織物·纖維製品 組合이 채택한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되었다.

각 수출업체들의 전년도 수출실적에서 平均單價를 계산한 다음 이들 輸出業體들을 그들의 平均單價別로 上·下位圈으로 구분하고 開放 綽타物量配定에 있어서 차등을 둔다.

非綽타地域輸出에 의한 구분이란 일정 부분의 開放綽타를 배분함에 있어서 전년도 非綽타地域 輸出實績에 따라서 綽타配定希望輸出 業體들을 구분하여 配定比率를 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오랫동안 輸出自律規制를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纖維織物 및 纖維製品組合의 1984年度 開放綽타配定額에 따르면 開放

綽타의 35%는 綽타申請業體들의 輸出信用狀을 高單價順으로 구분하여 綽타配定の 優先順位를 정하고 있고 開放綽타의 또 다른 35%는 綽타申請業體들의 전년도 輸出實績에서 平均單價를 산정하여 上位圈에 위치한 업체에게 보다 유리한 配定基準을 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30%의 開放綽타는 綽타申請業體別로 非綽타地域에 행한 輸出實績 또는 綽타地域에 행한 非綽타品目的 輸出實績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하고 있다.

餘他組合의 開放綽타配分方法도 細部指針에

〈表 1〉 輸出組合別 綽타配分制度

	輸出對象國	綽 塔 配 定 方 法		讓 受 渡
		基 本 綽 塔	開 放 綽 塔	
織 維	美·加·EC· 스웨덴	○ 前年度 輸出實績基準 ○ 平均單價順 上位 50%—102%, 下位 50%—98%	○ 開放量의 35%—高單價 L/C基準 ○ 開放量의 35%—前年度 實績 平均單價基準 ○ 開放量의 30%—前年度 비 綽타 地域 輸出實績基準	○ 組合員 商社에 한하여 基本 綽타의 30% 이내 ○ 開放綽타는 讓渡할 수 없음 ¹⁾
網 織 物	日 本	○ 前年度 綽타 消費實績의 100%	○ 開放量의 80%—平均單價 以上에 輸出實績基準 ○ 開放量의 20%—平均單價 以下에 輸出實績基準	○ 前年度 輸出參與商社 및 生産 施設 保有業體 로써 輸出 參與商社間 허용
綿 絲	日 本	○ 前年度 綽타 消費實績의 100%	○ 輸出 平均單價 以上에 申請 量比率	○ 상 등
運動用革靴	美 國	○ 前年度 輸出實績 基準 ○ 平均單價 以上—102%, 平均單價 以下—98%	○ 開放量의 40%—平均單價 以上—80%, 平均單價 以下—20% ○ 開放量의 50%—非綽타地域 輸出實績業體에 輸出物 量基準 ○ 開放量의 10%—高價品 輸 出量基準	○ 상 등
신 발 類	英 國	○ 前年度 綽타 消費實績의 100%	○ 平均單價 以上 業體에 基本 綽타保有比率 ○ 殘與量은 高單價 L/C基準	○ 基本綽타에 한하여 可能 ○ 모든 輸出商社 可能
신 발 類	아 일 렌 드	○ 一般靴: 前年度 輸出實績 基準 ○ 革靴: 前年度 輸出實績의 100%	○ L/C, D/A, D/P順 ○ 革靴는 申請順位, 一般靴는 市況에 따라 決定하고 同一項目時 高單價順	○ 상 등
金 屬 製 洋 食 器	美·英·西獨· 베네룩스· 濠洲	○ 前年度 輸出實績基準 ○ 配定比率은 金額·物量基準 輸出實績 各各 50% 반영	○ 非規制地域 및 製品 輸出 實績의 100% ○ 殘與量은 基本綽타 保有比率	○ 綽타 保有業體間 可能
黑白 T.V.	英 國	○ 前年度 綽타 消費實績基準 ○ 配定比率은 輸出物量占有 比 및 輸出價格占有 比를 各各 50% 반영	○ 基本綽타 保有商社에 限 ○ 高價格品目 및 非規制品目 輸出業體優待	○ 상 등

註: 1) 각 품목 공통
資料: 各 品目輸出組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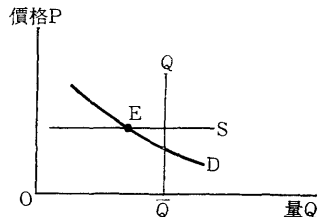
는 組合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소간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인 쿼타配分의 價格은 平均單價나 非쿼타地域에 행한 수출실적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여기에서 참고해들 사실은 쿼타配分이 문제되는 것은 그 품목이 인기가 높아서 업체에게 배분해 주어야 할 總輸出쿼타物量보다 업체들이 신청하는 希望쿼타物量이 더 클 때이다. 그러나 그 품목의 인기가 낮아서 업체들이 신청하는 希望쿼타物量이 그 품목의 總輸出쿼타物量보다 적은 非人氣品目的 경우에는 비록 그 품목이 輸出物量規制品目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物量規制는 사실상 유효하지 않으며 쿼타配定을 신청하는 업체는 전년도 실적에 상관없이 대체로 輸出쿼타를 배정받을 수 있다⁶⁾.

나. 쿼타의 讓受渡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정된 輸出쿼타는 原則적으로 쿼타를 배정받은 업체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로 基本쿼타의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업체간에 쿼타의 讓受渡가 허용되고 있다. <表 1>은 각 輸出組合別로 輸出쿼타의 配定方法和 쿼타의 讓受渡制限

6) 非人氣品目은 사실상 輸出物量規制가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圖 1]이 人氣品目的 市場需給均衡을 표시하고 있다면 非人氣品目的 市場需給均衡은 下圖에서와 같이 物量規制가 需給均衡의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7) 여기에서 언급되는 生産部門의 非効率은 「라이벤슈타인(H. Leibenstein, 1966)의 엑스 非効率과 동일한 개념이다.

에 관한 사항들을 비교하고 있다.

N. 現行 쿼타配分制度의 問題點

前節에서는 輸出自律規制가 이루어지는 품목의 輸出쿼타가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되는 부분과 輸出單價 및 非쿼타地域 輸出實績으로 배분되는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本節에서는 현행 輸出쿼타配分制度가 유발하는 경제적 문제점을 고찰한다. 현행 쿼타配分制度가 유발하는 경제적 문제에는 우선 과거 輸出實績에 따른 쿼타配分制度로 인해 발생하는 生産部門의 非効率, 쿼타物量を 획득하기 위하여 輸出業體가 地代追求(rent-seeking) 行爲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 그리고 쿼타配定節次要件이 輸出業體에게 주는 제약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불리한 去來條件의 세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1. 生産部門의 非効率

현행 쿼타配分制度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은 대체로 基本쿼타에 의하여서 일정량의 輸出쿼타를 보장받는 업체들이 경쟁에서 오는 압력을 느끼지 못함에 따라 生産部門에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데서 오는 비효율이라고 볼 수 있다⁷⁾. 더 나아가서 쿼타配分基準이 輸出業體의 生産效率와 관계없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費用節減의 노력보다는 輸出實績의 증대 또는 輸出單價의 조작에 더 관심을 갖

게 된다는 사실이 生産部門의 비효율을 더욱 확대시키는 이유이다.

이와 같은 生産部門의 비효율은 輸出自律規制가 장기간 시행되어온 纖維織物(textile), 纖維製品(clothing)業界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 있다.

〈表 2〉는 纖維織物·製品業界에서 사용되는

各種 機械設備의 老朽度を 표시하고 있다. 同表에서 사용되는 老朽度は 다음과 같은 算式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text{老朽度} = \frac{\text{老朽設備臺數}}{\text{總保有設備臺數}}$$

老朽設備：法人稅法上 減價償却年限이
지난 施設數

〈表 2〉 纖維織物 및 製品業界의 老朽施設 現況

	단 위	總 保 有 設 施	老 朽 設 施	老 朽 度	減價償却年限 (法人稅法)
綿 紡 績 機	1,000錘	3,325	1,279 (435)	38.5 (13.1)	10
梳 毛 紡 績 機	"	925	552 (78)	59.7 (8.4)	"
紡 毛 紡 績 機	"	131	50 (18)	38.2 (13.7)	"
綿 織 機	臺	75,697	38,932 (9,461)	51.4 (12.5)	"
毛 織 機	"	6,264	3,718 (819)	59.4 (13.1)	"
絹 織 機	"	98,249	45,568 (8,573)	46.4 (8.7)	"
其 他 織 機	"	9,869	4,373 (1,123)	44.3 (11.4)	"
染 色 加 工 機	"	7,386	4,206 (597)	56.9 (8.1)	7
丸 型 編 機	"	23,934	15,561 (1,739)	65.0 (7.3)	10
橫 編 機	"	27,052	23,939 (627)	88.5 (2.3)	"
其 他 編 機	"	12,454	7,650 (1,217)	61.4 (9.8)	"
假 撚 機	錘	202,380	93,690	46.3	11
縫 製 機	臺	171,880	52,770	30.7	7
化 織 設 施	% (日產)	1,524	609 (183)	40.0 (12.0)	8 (12年經過)
平 均	.	.	.	51.9	.

註：1) 老朽施設은 法人稅法 기준

2) ()안은 20年 經過分

資料：商工部

〈表 3〉 織機老朽度現況

(단위：臺, %)

設置年度	1960年 이전	1961~ 65	1966~ 70	1971~ 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總計
施設臺數	15,927	9,966	30,049	47,129	15,702	18,603	9,015	14,018	9,321	4,958	5,267	6,202	3,921	190,078
占有率(%)	8.4	5.2	15.8	24.8	8.3	9.8	4.7	7.4	4.9	2.6	2.8	3.3	2.1	100.0
累 計	8.4	13.6	29.4	54.2	62.5	72.3	77.0	84.4	89.3	91.9	94.7	98.0	100.0	

資料：韓國纖維産業聯合會

〈表 2〉에 의하면 紡績機, 織機, 縫製機 등 모든 시설에 있어서 老朽度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表 2〉에 나타나 있는 機械設備들의 老朽度の 單純平均, 즉 減價償却年限이 지난 機械設備의 수가 總機械設備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의 單純平均은 51.9%에 이르고 있다.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이 減價償却年限이 지난 機械設備임을 보여주고 있다.

〈表 3〉은 織機의 경우에 있어서 設置年度別로 織機를 구분하여 각 設置年度別 織機의 設備臺數와 이들의 비중을 구하였다. 同表의 마지막 行의 累計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織機의 경우에 있어서도 總織機設備 중에서 設置된 이래 10年 이상 사용되고 있는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초과(54.2%)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纖維織物·製品業界는 景氣變動과 유행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얼마간의 超過設備를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⁸⁾. 그러나 輸出業體들은 수요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이 부분의 수요에 대한 생산을 위하여서는 막대한 투자를 소요하는 新規施設을 구입하려 하지 않으며 그 대신에 노후한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게 된다.

즉 이 산업 전반에 상당한 정도의 비효율적인 시설이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個別輸出業體들은 일부의 효율적인 설비와 함께 상당한 양의 비효율적인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綫타의 配分方法이 業界內의 효율적인 시설만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즉 현

행 綫타配分制度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機械設備가 綫타配定을 받지 못할 때 상대적으로 덜 효율적인 機械設備가 綫타配定을 받아 生産稼動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만약 基本綫타가 자유롭게 讓受渡될 수 있다면 비록 基本綫타의 배정이 과거 輸出實績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생산의 비효율은 제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綫타配定을 받은 업체는 자신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만큼만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의 綫타는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다른 生産業體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賣出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여서 가장 효율적인 生産業體에게 綫타는 賣出할 수 있는가 하면 가장 효율적인 生産業體가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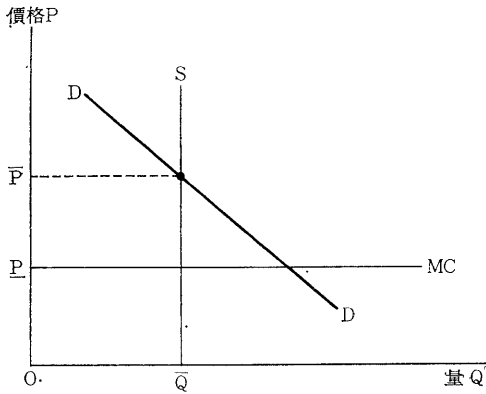
그러나 현행 綫타配分制度에서는 綫타의 讓受渡가 자유롭지 못하다. 基本綫타의 讓受渡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開放綫타는 그것의 配定方法 자체가 讓受渡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예컨대 開放綫타에서는 輸出信用狀의 代替가 허용되고 있지 않다. 즉 綫타를 배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輸出信用狀을 반드시 실제의 수출에 사용하여야 한다.

2. 地代追求(rent-seeking)行爲

輸出物量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면 地代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미 [圖 1]에 의하여 설명되었다. 따라서 輸出業體의 주요 관심사는 당연히 輸出綫타를 확보하는 일에 있게 된다. 더 많은 輸出綫타는 그만큼의 地代所得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8) 李進熙, 「大邱地域 織物業界의 現況」, 『섬유적물』, 韓國纖維織物輸出組合, 1984年 7月號 p. 18.

〔圖 3〕 價格協商



그러나 현행 쿼타配分制度에서 輸出쿼타의 배분은 輸出實績, 輸出信用狀의 輸出單價, 非 쿼타地域의 輸出實績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輸出業體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輸出 쿼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계속하게 된다.

地代追求行爲의 基準律

추가적인 쿼타를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費用 = 追加적인 쿼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즉 추가적인 쿼타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추가적인 쿼타를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한 輸出業體는 추가적인 쿼타를 얻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그것

9) 사실상 과거의 輸出實績에 따라서 쿼타를 배분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資源配分の 効率性(allocative efficiency)을 무시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또한 高輸出單價가 반드시 높은 收益性을 가진 商品을 輸出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非쿼타地域輸出이 반드시 유망한 新輸出市場의 개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 현행 쿼타配分制度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기준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임시변통되는 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현행 쿼타配分制度에서는 輸出業體들이 인위적으로 輸出實績이나 輸出單價 또는 非쿼타地域 輸出實績을 조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을 얻기 위한 행위에 자원을 소모한다.

이것은 企業行爲의 당연한 결과이나 만약 추가적인 쿼타를 얻기 위한 輸出業體의 노력이 제한된 輸出쿼타를 가지고 최대의 수익을 얻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수출업체가 취해야 하는 행위와 괴리를 가진다면 이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쿼타配分制度에서는 輸出쿼타配分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의 어느 것도 資源配分の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⁹⁾.

3. 價格協商에서의 不利益

여러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輸出物量이 규제되는 경우 그 商品市場은 販賣者의 市場(seller's market)으로 변하며 價格은 상승하여 消費者의 需要曲線上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즉 [圖 3]에서 價格은 \bar{P} 에서 결정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輸出物量規制란 수출업체로 하여금 당시의 市場價格에서 이들이 공급하고자 하는 분량보다 적은 물량을 공급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들 산업에 속한 輸出業體들은 超過設備를 보유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즉 輸出業體들의 잠재적 생산 능력은 규제된 輸出物量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만약 輸入業者들이 이들의 주도에 의하여 輸出業者와 직접 商談을 교섭하기에 따라서는 輸出價格은 \bar{P} 가 아니라 \bar{P} 와 P 의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이와 같은 현상이 일부 품목의 開放 쿼타를 배정하는 시기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開放쿼타를 신청하

기 위해서는 輸出信用狀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輸入業者들은 信用狀 發給을 미끼로하여 輸出業體間에 경쟁을 유도하고 價格引下를 도모하는 경향이 있다¹⁰⁾.

V. 輸出自律規制의 模型

쿼타配分制度의 改善方案을 논의하기 이전에 간단한 一般均衡模型을 소개하고 그 모형을 통하여 前節에서 언급된 두 가지 형태의 비능률, 즉 생산에 있어서 非效率과 地代追求 行爲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조사하고 輸出쿼타配分制度의 改善方向에 대한 示唆點, 그리고 制度改善으로 인하여 발생할 經濟現象을 묘사하여 본다.

1. 自由貿易의 一般均衡

여기에 소개되는 一般均衡模型은 매우 단순한 것이나 國民經濟效果를 분석하기에는 충분한 것이다. 우선 세 가지 財貨가 존재한다고 하자. 하나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輸入財 m 으로서 이 모형에서는 이것이 이 국가의 유일한 消費財이다. 나머지 두 개의 財貨는 輸出財 x_1, x_2 로서 이 국가는 이 두 종류의 輸出財를 생산하여 해외에 販賣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外貨를 가지고 消費財를 수입한다. 換率

은 1이라고 가정하고 式(1)에 의해 표현되는 바와 같이 國際收支는 언제나 균형을 이룬다.

$$m = P_1 x_1 + P_2 x_2 \dots\dots\dots(1)$$

P_1 : 消費財 單位로 表示한 x_1 財의 가격

P_2 : 消費財 單位로 表示한 x_2 財의 가격

式(1)에서 消費財 m 이 餘他財貨 x_1, x_2 의 價値尺度에 있어서 基準(numeraire)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경제의 生産可能曲線은 式(2)와 같이 표현된다.

$$f(x_1, x_2) = c \dots\dots\dots(2)$$

式(2)에서 c 는 總生産水準을 표시하는 常數이다. 이 경제에 賦存된 生産要素는 일정하다고 가정되며 財貨 x_1, x_2 를 생산하는 데에 사용된다. 각 財貨의 생산에는 限界生産力遞減의 法則이 작용하며 生産可能曲線은 원점에 대하여 오목(concave)하다. 生産可能曲線은 2次 連續微分이 가능(twice continuously differentiable)하다고 가정한다.

財貨(m, x_1, x_2)의 가격이 國際市場에서 각각 $(1, P_1^0, P_2^0)$ 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하자. 이 때 이 국가의 당면한 경제문제는 주어진 생산조건의 제약 속에서 소비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經濟問題 I>

目的函數 m

制約條件 $f(x_1, x_2) =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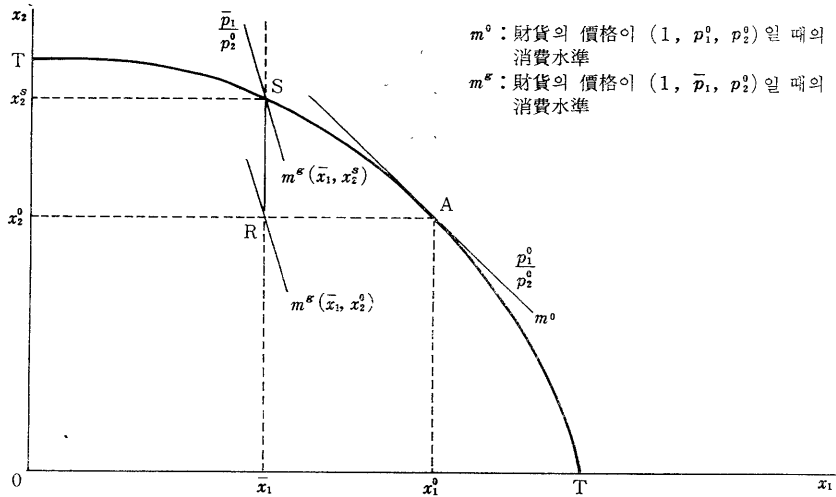
價格係數 $(1, P_1^0, P_2^0)$

經濟問題 I의 解를 구하면 式(3)과 같다.

$$\frac{P_1^0}{P_2^0} = \frac{f_1(x_1^0, x_2^0)}{f_2(x_1^0, x_2^0)} = MRT(x_1^0, x_2^0) \dots\dots\dots(3)$$

10) 예컨대 美國의 폴리에스터織物 輸入業者들은 國內業體들이 과다한 在庫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격의 인하를 기대하여 購買를 지연시키고, 輸出業者들은 서로 경쟁함으로써 價格引下 현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KOTRA, 『海外市場』, 1984. 7. 24, pp. 21~22).

[圖 4] 輸出自律規制의 模型



式(3)에서 f_i 는 式(2)에 있는 f 函數의 x_i 에 대한 偏微分이며 MRT 는 生産可能曲線의 限界轉換率을 말한다. 式(3)이 의미하는 것은 國際市場의 財貨價格時勢가 $(1, P_1^0, P_2^0)$ 로 결정 되었을 때 이 국가는 두 種類 輸出財를 生産함에 있어서 生産의 限界轉換率이 두 財貨의 相對價格比率과 같아지도록 生産(x_1^0, x_2^0)을 하는 것이 소비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圖 4]가 <經濟問題 I>의 解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점 A에서 주어진 相對價格과 두 輸出財生産의 限界轉換率이 일치하고 있다. 이때의 消費水準 m^0 는 주어진 海外市場價格條件에서 가장 극대화된 消費水準을 가리킨다

2. 輸出物量規制의 模型

이때에 輸出財 x_1 에 關係式 (4)와 같이 輸出物量規制가 실시되었다고 가정하자. 즉

$$x_1 \leq \bar{x}_1 < x_1^0 \dots\dots\dots(4)$$

x_1 財의 輸出物量이 \bar{x}_1 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規制되었기 때문에 x_1 財의 價格이 P_1^0 에서 \bar{P}_1 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不等號 (5)가 성립하게 되며 財貨의 價格體系는 $(1, \bar{P}_1, P_2^0)$ 로 변하게 된다.

$$\frac{\bar{P}_1}{P_2^0} > \frac{P_1^0}{P_2^0} \dots\dots\dots(5)$$

따라서 이 국가의 經濟問題는 <經濟問題 I>에서부터 다음과 같은 <經濟問題 II>로 바뀌게 된다.

<經濟問題 II>

目的函數 m

制約條件 $f(x_1, x_2) \leq c$

$x_1 \leq \bar{x}_1$

$x_1, x_2 \geq 0$

價格係數 $(1, \bar{P}_1, P_2^0)$

<經濟問題 II>의 「라그랑즈」函數는 다음과 같고 「쿤 터커」1次條件으로부터 解를 구하면 式 (6)~(9)와 같다.

「라그랑즈」函數

$$L(x_1, x_2, \lambda, \alpha) = \bar{P}_1 x_1 + P_2^0 x_2 + \lambda [c - f(x_1, x_2)] + \alpha (\bar{x}_1 - x_1)$$

「라그랑즈」 函數에서 λ 는 生産水準의 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消費水準의 변화, 즉 生産水準의 潛在價格(shadow price)이며, α 는 x_1 財의 畝地物量이 증가될 때 얻어지는 消費財의 增加分, 즉 x_1 財畝地の 潛在價格이다.

「쿤·터커」 1次條件

$$\bar{P}_1 = \lambda f_1 + \alpha \dots\dots\dots(6)$$

$$\lambda = \frac{P_2^0}{f_2} \dots\dots\dots(7)$$

$$\left. \begin{array}{l} c - f(x_1, x_2) \geq 0 \\ \lambda \geq 0 \\ [c - f(x_1, x_2)]\lambda = 0 \end{array} \right\} \dots\dots\dots(8)$$

$$\left. \begin{array}{l} \bar{x}_1 - x_1 \geq 0 \\ \alpha \geq 0 \\ (\bar{x}_1 - x_1)\alpha = 0 \end{array} \right\} \dots\dots\dots(9)$$

이상의 「쿤·터커」 1次條件 중에서 式(6)과 式(7)을 결합하면 다음의 式(10)을 얻을 수 있다.

$$\frac{\bar{P}_1}{P_2^0} = \frac{f_1}{f_2} + \frac{\alpha}{P_2^0} = MRT(\bar{x}_1, x_2^0) + \frac{\alpha}{P_2^0} \dots\dots(10)$$

式(10)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기 전에 式(3)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式(3)이 의미하는 것은 두 財貨의 相對價格이 市場에서 정해지면(예컨대 x_1 財 3개가 x_2 財 1개와 交換, 즉 $\frac{P_1}{P_2}$ 가 1/3) 두 財貨의 生産은 生産의 限界轉換率이 이들 財貨의 相對價格比率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조정(圖 4의 점 A에서 만약 限界轉換率이 1/3이면 그것은 x_1 財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희생해야 하는 x_2 財의 단위, 즉 x_2 로 표시한 x_1 의 生

産費用이 1/3임을 가리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市場에서 x_1 財 한 단위를 얻기 위하여 주어야 할 x_2 財의 單位數(P_1/P_2)보다, 生産過程에서 x_1 財를 생산하기 위하여 희생해야 할 x_2 財의 單位數(f_1/f_2), 즉 x_2 로 표시한 x_1 의 生産費用이 더 작다고 한다면 x_1 財의 生産을 더 늘림으로써 生産效率을 더 높일 수가 있다.

그러나 關係式(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輸出物量規制로 말미암아 x_1 財의 價格이 P_1^0 에서 \bar{P}_1 로 상승하였다. x_1 財의 價格이 상승하였으므로 式(3)에 따라서 x_1 의 生産量增加가 뒤따라야 할 것이나 關係式(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輸出物量規制로 인하여 x_1 의 生産은 價格이 P_1^0 일 때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두 財貨의 相對價格과 生産의 限界轉換率 사이에는 괴리가 생기게 되며 式(10)은 이 사정을 표현하고 있다.

關係式(5)는 式(10)의 左邊이 式(3)의 左邊보다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關係式(4)는 輸出物量規制로 인해서 두 財貨生産의 限界轉換率이 式(3)의 경우에서 式(10)의 경우로 감소하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즉 [圖 4]의 점 S에서 生産可能曲線의 기울기의 絕對值 $MRT(\bar{x}_1, x_2^0)$ 는 점 A에서의 기울기의 絕對值 $MRT(x_1^0, x_2^0)$ 보다 작다. 다시 말하자면 x_1 財의 相對價格은 상승했는데 희생되는 x_2 財의 단위로 표시한 x_1 財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따라서 式(10)으로부터 α/P_2^0 는 正의 값을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α/P_2^0 는 바로 x_2 財로 표시한 x_1 財 畝地의 地代이다.

이상에서 발견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定理 1〉

輸出物量規制가 발생하면 그 財貨의 相對價格은 상승하는 반면에 그 財貨의 生産을 위하여 희생하여야 할 다른 財貨로 표시한 機會費用은 감소한다. 즉 輸出物量規制가 실시된 財貨의 價格에 는 正의 地代가 포함된다.

證明: 이미 證明이 완료되었다. □

〈定理 2〉

輸出物量規制가 실시된 財貨의 쿼타에 正의 地代가 발생하면 同財貨의 生産을 規制限度量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시키는 것이 社會福祉를 극대화시킨다.

證明:

關係式(9)에서 $(x_1 - x_1)\alpha = 0$ 이다. 만약 $\alpha > 0$ 이면 $x_1 = x_1$ 이다. □

더 나아가서 關係式 (8)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다.

〈定理 3〉

輸出財의 生産으로 인한 消費增加의 효과가 零이 아닌 한 즉 輸出財의 價格이 零이 아니고 輸出財의 生産費用이 무한대가 아닌 한 生産은 生産可能曲線의 邊方線 위에서 이루어져야 社會福祉가 극대화된다.

證明:

輸出財 生産으로 인한 消費增加의 효과가 零이 아니므로 式 (7)이나 式(8)에서 $\lambda \neq 0$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ambda \neq 0$ 이면, 關係式 (8)에서부터 $c = f(x_1, x_2)$ 이다. 즉 두 財貨의 生産이 生産可能曲線의 邊方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결국 간단한 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한 분석으

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輸出物量規制가 이루어진 경우에 生産은 점 A에서부터 점 S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점 S에서의 生産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기 위하여 式(10)을 다음과 같이 變型시켜본다.

$$\frac{\bar{P}_1 - \alpha}{P_2^0} = MRT(x_1, x_2^0) \dots\dots\dots(10)'$$

式(10)'이 意味하는 것은 이 國民經濟가 점 S에서 生産을 하기 위하여서는 두 輸出財를 生産하는 生産業者들이 두 財貨 x_1, x_2 의 價格이 市場에서 $\bar{P}_1 - \alpha, P_2^0$ 인양 생각하고 利潤極大化를 目的으로 生産에 임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言及된 바와 같이 市場에서의 두 輸出財의 價格은 \bar{P}_1, P_2^0 이지 $\bar{P}_1 - \alpha, P_2^0$ 가 아니다. 즉 x_1 財의 市場價格이 점 S에서의 市場價格보다 x_2 財 쿼타의 地代만큼 높다. 즉 이 國民經濟가 점 S에서 生産을 하기 위하여서는 輸出物量規制가 이루어진 財貨의 市場價格에서 그 財貨 쿼타의 地代만큼을 政府가 還收하고 나머지의 價格 $\bar{P}_1 - \alpha$ 만 生産業者에게 돌려 줄 필요가 있다.

如何한 方法에 의하여서 政府는 輸出物量規制가 이루어진 財貨의 市場價格중에서 쿼타의 地代만큼을 還收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는 다음 節에서 論議된다.

VI. 輸出쿼타配分制度의 改善方案

前節에서 소개된 모형에서는 輸出物量 規制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 社會의 資源配分을

적절히 하려면 여하히 對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미 개관한 바와 같이 현행 配分制度에서는 생산에 있어서 非効率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또한 地代追求行爲에 의한 資源의 낭비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 이와같은 생산에 있어서의 非効率과 地代追求行爲에 따른 資源의 낭비는 生産可能曲線의 내부에서 生産活動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1. 配分 讓受渡의 自由化

[圖 4]에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非効率이 直線 SR 部分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시된다. 그 이유는 생산의 비효율이나 地代追求行爲에 따른 資源의 낭비가 x_1 財 生産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승시켜서 生産可能曲線을 TT 曲線의 안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x_1 財의 생산은 配分限度量 x_1 까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생산은 SR 線上에서 이루어진다¹¹⁾.

이와 같은 生産過程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輸出配分의 讓受渡를 自由화하는 것이다. 配分의 讓受渡가 自由화되면 輸出組合의 配分配定이 여하한 방법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든 간에 상관없이 이 상품의 생산이 효율적인 방법에 의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輸出配分을 배정받은 업체는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그들 자신이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만큼만 自

體生産으로 生産하고 여타의 配分物量은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生産業者에게 賣出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일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 있는 生産業者는 물론 가장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生産業者이다. 즉 輸出配分의 讓受渡를 自由화 하면 생산의 비효율이 제거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할 사실은 輸出配分物量이 정해질 때 구체적인 상품의 輸出配分物量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關稅分類(CCCN)에 따른 商品群의 輸出物量이 정해진다. 는 사실이다. 즉 같은 商品群에 속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收益性에 차이가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기왕의 輸出配分物量이 정해진 이상, 가장 收益性이 높은 상품들만 골라서 수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輸出配分의 讓受渡가 自由로 이루어지면 生産費用을 최소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 收益性이 높은 상품을 선정하여 수출한다는 의미에서 輸出配分이 가장 효율적인 輸出業者에게 讓受渡되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자만이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配分讓受渡를 自由화한다는 방안은 두 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비록 그것이 생산의 비효율을 제거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地代追求行爲는 제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地代追求行爲에 의하여 초래되는 資源의 낭비를 제거할 수 없으며 생산은 아직도 生産可能曲線의 線上이 아니라 내부에서(圖4의 RS 線上에서) 이루어진다.

다른 하나의 단점은 최초로 配分을 배정하는 방법이 현행 제도를 따르는 한 衡平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配分을 배정

11) 이것은 크루거 女史(A. Krueger, 1974)가 地代追求行爲를 함으로써 資源의 낭비가 있는 輸入制限의 경우로 분류한 경우와 配分의 관계에 있는 輸出自律規制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받은 업체는 그만큼의 地代所得을 아무런 代價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셈이 된다. 물론 이런 특혜를 얻기 위하여 地代追求行爲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만 일정한 畝地物量이 既得權으로 인정되는 부분만큼은 순수한 地代所得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단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畝地讓受渡를 자유화시키는 것이 輸出畝地配分制度의 궁극적인 改善方案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畝地의 讓受渡가 生産過程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1차로 畝地配定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畝地를 讓受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競賣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輸出畝地가 애당초 輸出組合으로부터 輸出畝地를 얻기를 원하는 업자들에게로 競賣될 경우에는 生産過程에서 발생하는 非効率뿐만 아니라 地代追求行爲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도 제거할 수 있다.

2. 輸出畝地競賣制

輸出畝地競賣制는 輸出業者들이 輸出畝地를 配定받으려고 경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장 높은 收益성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며 그렇게 선택된 상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촉구하는 제도적 장치의 구실을 한다. 따라서 輸出畝地競賣制에서는 生産의 非効率뿐만 아니라 地代追求行爲가 제거된다. 뿐만 아니라 輸出畝地를 배정받기 위해서 같은 상품에 대하여 輸入業者로부터 높은 가격을 얻

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절차상으로 輸出業者에게 별다른 제약이 요구되지 않는 한 輸出業者들은 선택한 상품을 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음으로써 최대의 地代를 얻어내도록 제도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다. 즉 畝地競賣制는 [圖 3]에서 가격이 \bar{P} 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구실을 한다.

이와 같이 輸出畝地競賣制는 현행 畝地配分制度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輸出畝地競賣制는 輸出物量規制라는 주어진 制約에서 社會福祉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선(second best)의 방안이다.

[圖 4]에서 輸出畝地競賣制가 채택된 경우의 생산은 점 S로 표시된다. 점 S에서는 식 (3)의 條件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最善의 方案(optimum optimum)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輸出物量規制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약이라고 할 때 점 S는 주어진 制約下에서의 최선의 방안이다. 점 S는 주어진 畝地物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고 여타의 자원을 여타의 財貨를 생산하도록 효율적으로 전환시킬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현행 畝地配分制에서는 畝地配定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生産物量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생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畝地競賣制가 시행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업체들만이 생존이 가능하며 이들은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를 향유할 수 있는 生産水準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地代所得이 특정 업체에게 독점되지 않고 국가에 회수될 수 있으며 따라서 전반적인 輸出産業支援에 사용될 수 있다¹²⁾.

輸出畝地配分制度가 변경되면 새로운 輸出

12) 地代所得이 반드시 그것이 회수된 산업에 사용될 필요가 없다. 畝地競賣制의 장점은 주어진 畝地物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는 데 있다. 만약 地代所得이

쿼타配分制度가 실시되는 산업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産業組織이 再編成되게 된다. 따라서 일시에 모든 쿼타物量이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배분되면 그 산업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즉 갑작스럽게 全輸出쿼타를 對象으로 競賣制를 실시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競賣制를 도입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예컨대 쿼타競賣制를 우선 開放쿼타에 한하여 실시하고 開放쿼타의 物量을 수년간의 시한을 두어 점차 늘려 나가서 결국 모든 基本쿼타를 개방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¹³⁾.

Ⅶ. 要約 및 結論

本稿에서는 輸出自律規制가 保護貿易主義의 한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輸出自律規制가 輸入國의 生産業者들에 의하여 추구될 뿐만 아니라 輸出業者들로 하여금 이를 選好하게 하는 兩面性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輸出物量規制는 輸出쿼타配定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키게 마련이나 현행쿼타配分制度는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生産의 非效率, 地代

追求行爲와 같은 資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현행 쿼타配分制度에서는 輸出쿼타申請要件의 일부가 輸入業者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價格協商에서 輸出業者들을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을 우려가 있다.

本稿에서는 간단한 一般均衡模型을 開發하여 輸出物量規制에 對處하는 最善의 方案(second best solution)은 주어진 쿼타物量을 最小의 費用으로 생산하고 餘他的 資源은 餘他財貨의 生産을 위하여 轉換시키는데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와같은 輸出物量規制에 대처할 수 있는 最善의 方案은 輸出쿼타競賣制에 의하여서 制度化가 可能하다는 事實과 輸出쿼타競賣制는 現行 輸出쿼타配分制가 超來하는 問題點을 모두 除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쿼타競賣制가 實施되면 輸出商品構成이 보다 高收益性을 가진 商品을 중심으로 改編되게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輸出쿼타競賣制는 輸出物量이 規制되는 産業전반에 걸쳐서 産業組織을 變化시킬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施行에 따른 混亂을 極小化시키기 위하여 開放쿼타에서부터 漸進적으로 施行하는 것이 하나의 方案이라는 점이 示唆되었다.

마지막으로 쿼타競賣制는 輸出物量規制의 경우에서의 동일한 논리로 輸入쿼타配分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輸入쿼타配分은 地代追求行爲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반드시 그것이 회수된 산업에만 국한되어 사용된다고 한다면 使用方法에 따라서는 資源의 낭비를 다시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13) 輸出쿼타 競賣制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쿼타競賣의 基本單位를 적당히 낮은 物量水準까지 낮추어서 高價의 少量 주문이 이루어지는 제품에 대한 輸出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쿼타競賣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市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競賣스케줄을 조정하고 또한 연중 수차에 걸쳐서 競賣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參 考 文 獻 ◁

- 李進熙, 「大邱地域 織物業界의 現況」, 『섬유직물』, 韓國纖維織物輸出組合, 1984年 7月號, pp. 14~20
- 申鳳浩, 「A Modified Model of Posner's Rent-Seeking Theory—The Social Cost of Monopoly」, 韓國經濟學會, 『1983年度 定期學術大會論文集』, 1984. 2, pp. 181~221.
- 韓國貿易協會, 「先進國의 對韓輸入規制現況」, 『日刊貿易會報』, 1984年 8月 25日
- 韓國纖維製品輸出組合, 『84各國纖維유통管理指針』, 1984. 2.
- , 『各國纖維유통執行現況』, 1984. 5.
- 韓國纖維織物輸出組合, 『섬유직물』, 1984. 4月~8月 各號
- Corden, W.M., *The Theory of Protection*, Chs. 9 and 10, Oxford Univ. Press, 1971.
- Harris, R., “Why Voluntary Export Restraints are ‘voluntary’”, Queen’s Univ. Canada, *Discussion Paper* #559, March 1984.
- Hamilton, Carl, “Voluntary Export Restraints: ASEAN Systems For Allocation of Export Licence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Seminar Paper No. 275*, Univ. of Stockholm, March 1984
- , “A New Approach to Estimation of the Effects on Non-Tariff Barriers to Trade; An Application to the Swedish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Weltwirtschaftliches Archiv*, Band 117, Heft 2, 1981, pp. 298~325.
- Krueger, A.O.,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ER*, June 1984, pp. 291~303.
- Leibenstein, Harrey, “Allocative Efficiency vs. ‘X-Efficiency’”, *AER*, June 1966, pp. 392~416.
- Morkre, E. Morris, “Rent-Seeking and Hong Kong’s Textile Quota System”, *The Developing Economies*, March 1979, pp. 110~118.
- Ono, Yoshiyasu, “Profitability of Export Restrai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16, No.314, May 1984, pp. 335~343.